

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
자유무역협정

대한민국 정부(“대한민국”)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(“싱가포르”)(이하 “양 당사국”이라 한다)는,

양국의 오랜 우호적 유대와 확고한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의식하고,

2002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(“대한민국·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”)의 혜택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단의 설립을 상기하며,

양 당사국이 대한민국·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교섭하고 공동연구단 보고서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교섭의 골격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공동연구단 보고서상의 건의사항을 채택하기를 희망하며,

무역 자유화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며,

양국의 경제적 통합이 보다 큰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,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며, 양국의 기업 및 아시아 내 여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한 투명성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,

양 당사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자본 및 인적 자원에 대한 유인을 향상시키고 보다 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양 당사국 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공유하며,

아시아에서 열린 시장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고 지역 내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약속을 확인하며,

이 협정이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(“세계무역기구협정”)에 구현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세계무역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,

세계무역기구협정과 협력에 관한 그 밖의 다자·지역 및 양자적 합의문서상의 당사국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,

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과 산업 및 규제 협력의 확립을 통하여, 상호 무역 및 투자를 진흥할 것과 지역적 무역통합의 혜택을 우회적으로 취하는 것을 회피하기로 결의하여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장 일반조항

제 1.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

이 협정의 양 당사국은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(“1994년도 GATT”) 제24조 및 「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(“GATS”)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.

제 1.2 조 목 적

이 협정은 내국민 대우·최혜국 대우 및 투명성을 포함한 이 협정의 원칙과 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대로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.

- 가. 양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시키며 투자를 증대한다.
- 나. 양 당사국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구축한다.
- 다. 자유무역지대에서 양국의 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틀을 구축하고 공정 경쟁의 조건을 증진한다.
- 라.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틀을 구축한다.
- 마. 이 협정의 시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. 그리고
- 바. 이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며 이로써 아시아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통합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간의 협력 제고의 틀을 구축한다.

제 1.3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상대국에 대한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.
2.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이 불합치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상대국과 즉시 협의한다.
3.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이 협정이 제2항에서 언급된 그러한 불합치에 관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경우, 그 조항이 적용된다.

제 1.4 조 다른 협정의 인용

1. 이 협정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또는 GATS 조항의 인용은 적용가능한 경우 그 주해를 포함한다.
2. 이 협정에서의 다른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인용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후속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.